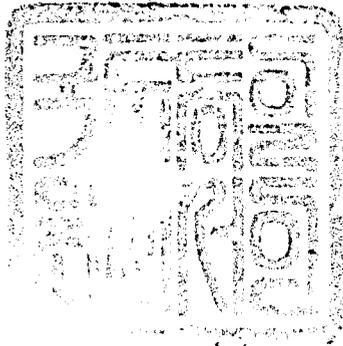


남북한 주민접촉과 교류협력 어떻게 이루어지나?



국 토 통 일 원

목 차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의 의의 1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 해설 3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승인절차 안내 10.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관계 .. 25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의 의의

이제까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는 국가보안법이 유일한 것이었으며, 국가보안법 체계내에서 남북한 주민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반국가행위로 규제되어 왔다.

남북관계를 『국가보안법』에 의해 규제일별도로 다룬 것은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국제적 냉전체제와 대립적 남북관계에 기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즉, 외적으로는 동서냉전의 극심한 대립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북한이 대남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신중하고도 통제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6공화국 들어 우리 정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방정책의 활발한 추진 및 사회민주화의 실현등을 통해 보다 성숙한 국민적 역량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보다 전향적인 통일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동서화해와 공산권의 개혁·개방화 등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통일정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새지평을 열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는 남북간의 접촉·왕래·교역·협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 이 법에 위배된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위반에 대한 질서벌로서만 규제하고 있는바, 이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우리의 법률제도는 『국가안보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위해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수단에 덧붙여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또 하나의 정책수단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있어 초석이 될 것이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 해설

남북한 주민간 접촉

접촉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전화·편지 또는 회합을 통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한 주민이 상호왕래를 한다거나 교역을 위해서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접촉을 통해 상호 의견교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이 성사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이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에서는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접촉 승인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한주민이 북한에 가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것과 반대로 북한주민이 남한에 와서 남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방문목적은 실현하기 위하여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은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가족방문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또는 가족이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전화를 하는 것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인을 만난다

든가 본래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는 접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접촉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국제행사에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외국에서 가족인 북한주민과 만난 경우, 교역을 위하여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하게 사전승인없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등에는 접촉한 후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 목적 또는 전후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접촉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상당히 개방적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더 쉽게 접촉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을 터 놓고 있다.

남북한 왕래

법률에서는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 상대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방문증명서의 발급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우선 남한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사진 및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라고 하겠다. 즉, 북한에서 초청장등이 있는 경우에 신변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아직은 상호신뢰의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간 남한주민이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는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 개인을 위해서나 남북한 관계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우리 주민이 북한에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북한방문을 허용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으로 남북간에 통행합의서가 채택되면 방문을 하려는 개인이 이러한 보충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나 그때까지는 방문신청자가 남북한 주민의 접촉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다만, 방문증명서 제출이 현단계에서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아 남한주민이나 외국인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북한주민에 대하여 정부가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바로 이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방문증명서는 남한지역에서 일종의 신분증명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도 남북한 당국간의 별도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례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남북한 주민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였거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에 살고 있는 북한적을 보유한 우리동포 및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다만,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의 왕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를 해치는 남북간 접촉·왕래등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즉, 이제까지는 국가보안법체계에 의하여 일체의 남북간 교류·협력이 반국가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왔는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 행위중에는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행위와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구분하게 되었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국가안보를 해치지 아니하는 교류협력행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해칠 목적의 교류협력행위는 근원적으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남북한간 교역

남북한간 물자의 교역은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될 것이며, 민족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교역은 많을수록, 자유스러울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현실과 상호 화폐단위가 다르다는 한계로 인하여 남북한간 교역은 우선 국제무역 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교역 당사자는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고 있다.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출·입승인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교역대상품목 고시에 의하여 반출입 자동승인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반출입에 대하여는 감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남북한간 반출입되는 물품은 내국간 물품의 이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수입분 방위세 및 기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한간 교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출에 준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간 교역이 활성화되고 남북당국간의 합의가 있다면 청산결제 방식에 의한 남북간 교역이 가능하게 될 것이

며,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협력사업

남북간에 개방되고 있는 협력사업이라고 함은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하며,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국가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사업자로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력사업은 그 내용에 따라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협력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협력사업자로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법인·단체포함)이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은 자에게 협력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건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사업을 할 수 있고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은 자이더라도 협력사업시행중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및 3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등에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협력사업자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사업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상대자와의 협의서등을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사업자는 상대자와의 협의를 선행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북한주민 접촉 또는 북한을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사업은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협력사업자의 능력으로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며 남북한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승인하게 된다. 또한 협력사업에 부수되는 외국환의 거래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도 있게 된다.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내국세법을 적용하되 북한 당국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승인 절차안내

인적교류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9조 제3항)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남북한 주민간 접촉>

신청방법

- 접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일전까지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접촉승인을 신청함.(시행령 제19조 제2항)
-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함.(시행령 제19조 제3항)

구비서류

- ① 북한주민 접촉신청서
- ② 신원진술서
- ③ 기타 국토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행령 제19조 제2항)

사후 신고로 사전신고를 갈음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시행령 제19조 제4항)
- ①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 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②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③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함.)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 ④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⑤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토통일원장관에게 구비서류 제출(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구비서류

- ①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신원진술서
- ③ 사진 4매(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 ④ 병역대상자는 병무청장이 발행하는 허가서 혹은 신고서
- ⑤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예, 초청장)
- ⑥ 기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시행령 제10조 제1항)

대리신청시 지참 서류

- ①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 ②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시행령 제11조 제1항)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

구비서류

- ①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사진 4매(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 ③ 기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시행령 제10조 제2항)

대리신청시 지참 서류

- ①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시행령 제10조 제4항)

<재외국민의 북한왕래>

신고방법

- 출발 5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함.(시행령 제18조 제2항)

구비서류

- ① 북한방문신고서
- ②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행령 제18조 제2항)

사후신고로 사전신고를 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한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전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①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②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재외국민의 범위 :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자

<인적교류에 관한 정부의 조치사항>

증명서 발급의 협의

-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사항 : 중요사항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사항
 - ① 100인 이상의 단체 왕래
 - ② 정치적 목적의 왕래

- ③ 기타 국토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
(시행령 제12조)

편의제공

- 국토통일원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간 왕래자에게 필요한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시행령 제13조)

출입심사

- 남북간을 왕래하는 주민에 대해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를 함.(법 제11조)
- 출입심사의 내용
 - ① 신원확인
 - ②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 ③ 검역
 - ④ 방문증명서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 ⑤ 기타 국토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심사확인

출입심사공무원은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을 날인하여야 함.(시행령 제23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 국토통일원장관은 남북간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시함(시행령 제24조)

※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목 및 처리방법 : 국토통일원고시 제1호 참조

<증명서의 재발급 및 방문기간>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 방문증명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
 - ① 재발급신청서
 - ② 사진 2매
 - ③ 기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방문기간

- 방문기간은 그 목적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로 하며,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시행령 제16조)

<인적왕래후 조치사항>

증명서의 반납

- 남북한을 왕래한 자가 귀한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해야함.(시행령 제17조 제1항)
- 북한 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

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국토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시행령 제17조 제2항)

물자교역

- 교역을 할 수 있는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함.(법 제12조)
-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신청 방법>

신청방법

-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국토통일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26조 제1항)
- 다만, 교역대상물품 고시에 의하여 반출·입 자동승인 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반출입에 대하여는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국토통일원 고시 제2호, 제2조제2항)

<물자교역에 관한 정부의 조치사항>

협의를 의결

- 물자교역에 관한 승인을 함에 있어 국토통일원장관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행정기관장과 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

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 반출·반입되는 물품에 관여하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통일원장관이 미리 공고함.(법 제14조)
- 공고되는 물품의 구분(법 제14조)
 -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 ※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 : 국토통일원고시 제2호 참조

<세제혜택 및 지원>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여 관세 및 수입분 방위세 면제 (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3항)
- 남한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
 - 외국과의 수출에 준하여 대외무역법 등에 규정된 다각적 지원(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

〈교역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국토통일원장관이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품질 또는 거래조건등에 관한 조정명령의 준수(법 제15조 제1항)
- 국토통일원장관이 요구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법 제15조 제2항)

협력사업

-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16조 제1항)
-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17조 제1항)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방법

-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31조 제 1항)

협력사업자의 승인요건

- ①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② 원하는 사업분야에서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이 있을 것
- ③ 기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시행령 제30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방법

- 협력사업자가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사업마다 국토통일원장관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신청함.
(시행령 제34조)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 ②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 ③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 ④ 북한당국의 확인서
- ⑤ 기타 국토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시행령 제34조)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 ①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할 것
 - ②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 ③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 ④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가 부합될 것
 - ⑤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시행령 제35조)

<협력사업에 관한 정부의 조치사항>

협력사업자 승인증 교부

- 국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 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함.(시행령 제31조 제 3항)

협약·의결

-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을 함에 있어 국토통일원장관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행정기관장과 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법 및 시행령의 관련조항)

협력사업 승인여부의 협의회 상정

- 국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을 받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함.(시행령 제36조)

협력사업자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전 통지

- 국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시행령 제33조)

<협력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국토통일원장관이 명하는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준수(법 제18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37조)
- 국토통일원장관이 요구하는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법 제18조 제 2항 및 시행령 제38조)

- 보고하여야 할 사항

- ①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 ② 사업의 착수
- ③ 사업진행사항
- ④ 사업의 만료 또는 ①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 ⑤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 ⑥ 기타 국토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고기일

- 사업진행사항 -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
- 기타사항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수송장비의 운행 및 통신역무의 제공

-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음.(법 제20조)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음.(법 제22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방법

-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함.(시행령 제42조)

운행의 승인기준

- ①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 소지할 것.
- ②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 ③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 ④ 영리목적일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 ⑤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 ⑥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시행령 제43조)

검역

-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법 제23조)

<통신역무의 제공>

통신역무의 제공자

-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함.
(시행령 제46조 제 1항)

통신역무의 종류

- ① 통상 우편물
- ② 소포 우편물
- ③ 유선 전기통신(시행령 제46조 제 2항)

통신역무의 요금

- 우편업무 : 국내우편요금
○ 전기통신역무 :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요금
(시행령 제47조)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관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함과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법안은 1990. 7. 14. 제 150회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더불어 『남북협력기금법』으로 통과되었다.

『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법』에 따르면 재원은 정부 및 민간출연금을 중심으로 조성되며, 국토통일원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기금법』의 공포와 더불어 일차적으로 3,000억원규모의 기금조성 3개년계획 (1991-1993)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남북간 인적왕래·교역·협력사업에 관한 전면개방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통일의지를 법적으로 천명한것이라면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각종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